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 ① 구립서대문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③ 이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퇴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⑥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의 조정, 물가변동,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경, 이용자 및 보호자 계약변경요청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한다.

2. 월이용비용

- ① 데이케어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데이케어센터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 ② 데이케어센터는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 ③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요 양 급 여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62,4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67,240
비 급 여	식재료비 (1식)	4,000					
	간식비 (1회)	1,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景观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 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 수납 불가
- 2) 세부기준
 -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2)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하나 단, 이용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시설물 이용 상의 주의 및 관리 등

- ① 데이케어센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의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데이케어센터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데이케어센터가 산출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다.

4. 계약해제

- ①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데이케어센터에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④ 월이용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

5. 신원 인수인

-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로 한다.
- ② 이용자의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한다.
- ③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즉시 인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원 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원 인수인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아닐 경우 데이케어센터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